



서울특별시

서울의료원

제 303회 시의회 정례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정관 개정 (안) 보고

2021. 12. 17.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1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○ 필요성
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임원, 예산에 관한 규정 재정비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안전전담 조직 신설 등 서울의료원 기능강화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

□ 주요내용

〈운영에 관한 사항〉

○ 임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(제6조 및 제31조)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노동이사 명칭 정비 (노동자이사, 노동자대표 ⇒ 노동이사)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반영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매사업연도 시작 전 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

○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제19조)

- 의결안건 중 ‘중요한 규정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’을 ‘규정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’으로 개정 ※ 서울시 출연기관 공통사항으로 적용하고자 함

○ 위원회(의료원장 자문 기구)에 관한 사항 개정(제43조)

- 외부위원 위촉, 회의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규정으로 관리토록 개정 ※ 서울시 출연기관 공통사항으로 적용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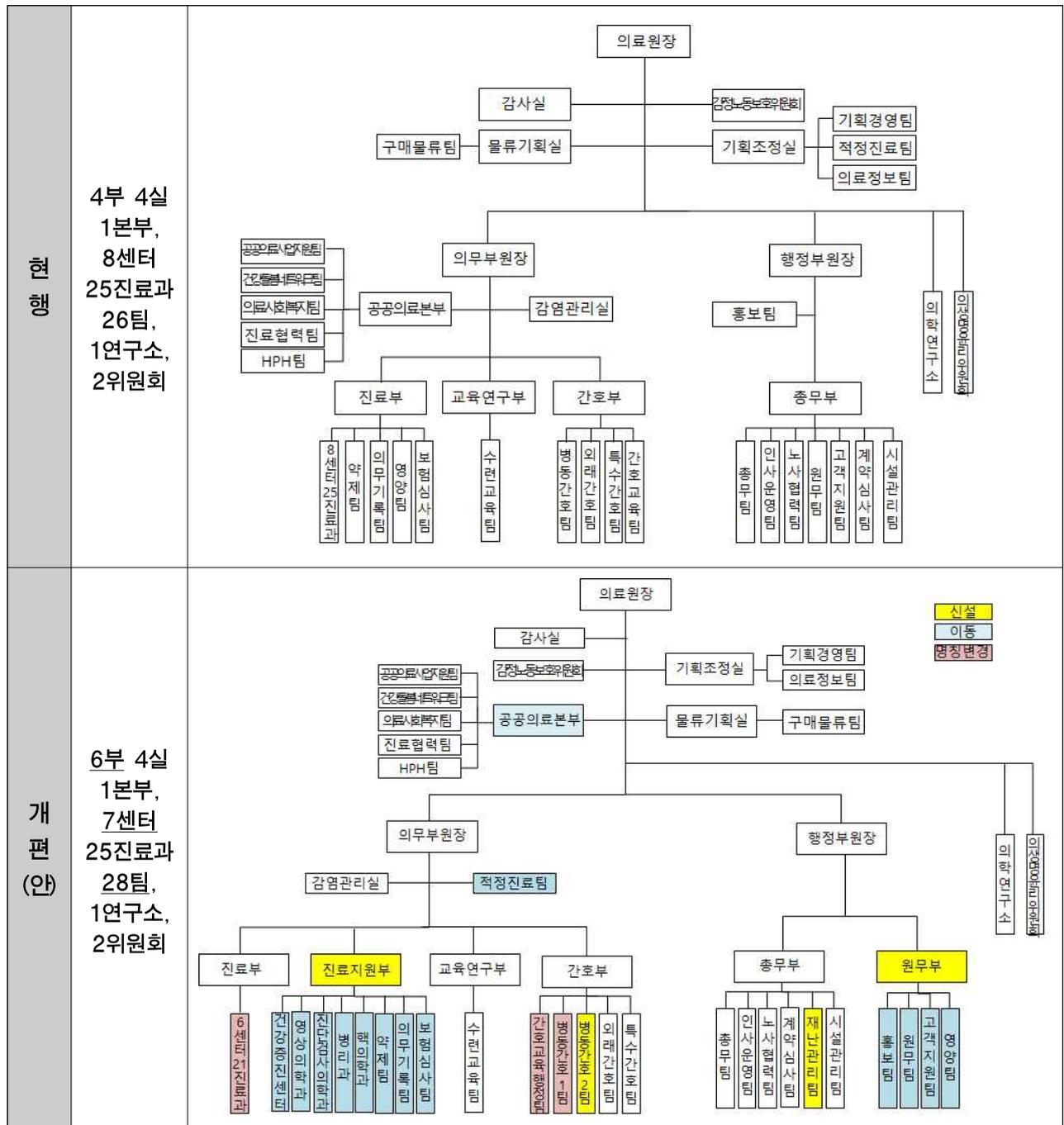
〈조직개편에 관한 사항〉

○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(제41조)

- 조직 개편 : 4부 4실 1본부, 8센터 25진료과 26팀, 1연구소, 2위원회
⇒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

〈주요 개편 내용〉

- ① 진료부문 : 진료부 ⇒ 진료부, 진료지원부로 세분화(1부 증설),
8센터⇒7센터(아토피천식센터 삭제)
- ② 간호부문 : 병동간호팀 세분화(병동간호팀 ⇒ 병동간호1팀, 병동간호2팀),
간호교육팀 기능 강화(간호교육팀 ⇒ 간호교육행정팀)
- ③ 공공의료부문 : 의무부원장 산하에서 의료원장 직속으로 이동 배치
- ④ 행정부문 : 총무부 ⇒ 총무부, 원무부로 세분화(1부 증설),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난관리팀 신설



- 정원 조정 : 조직개편에 따른 직군별 급수 조정(증감없음)

⇒ (간호직) 2급 1명 증, 4급 이하 1명 감 ※ 병동간호2팀장 신설

(관리직) 2급 1명 증, 4급 이하 1명 감 ※ 원무부장 신설

※ 직급별 세부 조정 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계	1 급				2 급				3 급				약무·간호·보건·관리직 4~6급	연구직	기능직 (1~3 등급)	운영지원직	임대민간계 별내정영			
		계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계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계	약무직					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
현행	1,664	3	-	1	-	2	16	1	6	4	5	61	2	29	12	18	1,079	9	250	220	26
개편(안)	1,664	3	-	1	-	2	18	1	7	4	6	61	2	29	12	18	1,077	9	250	220	26
증감	-	-	-	-	-	2	-	1	-	1	-	-	-	-	-	-	Δ2	-	-	-	-

향후계획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1.12월
- 서울특별시장 승인 및 정관 개정(안) 시행 : '22.1월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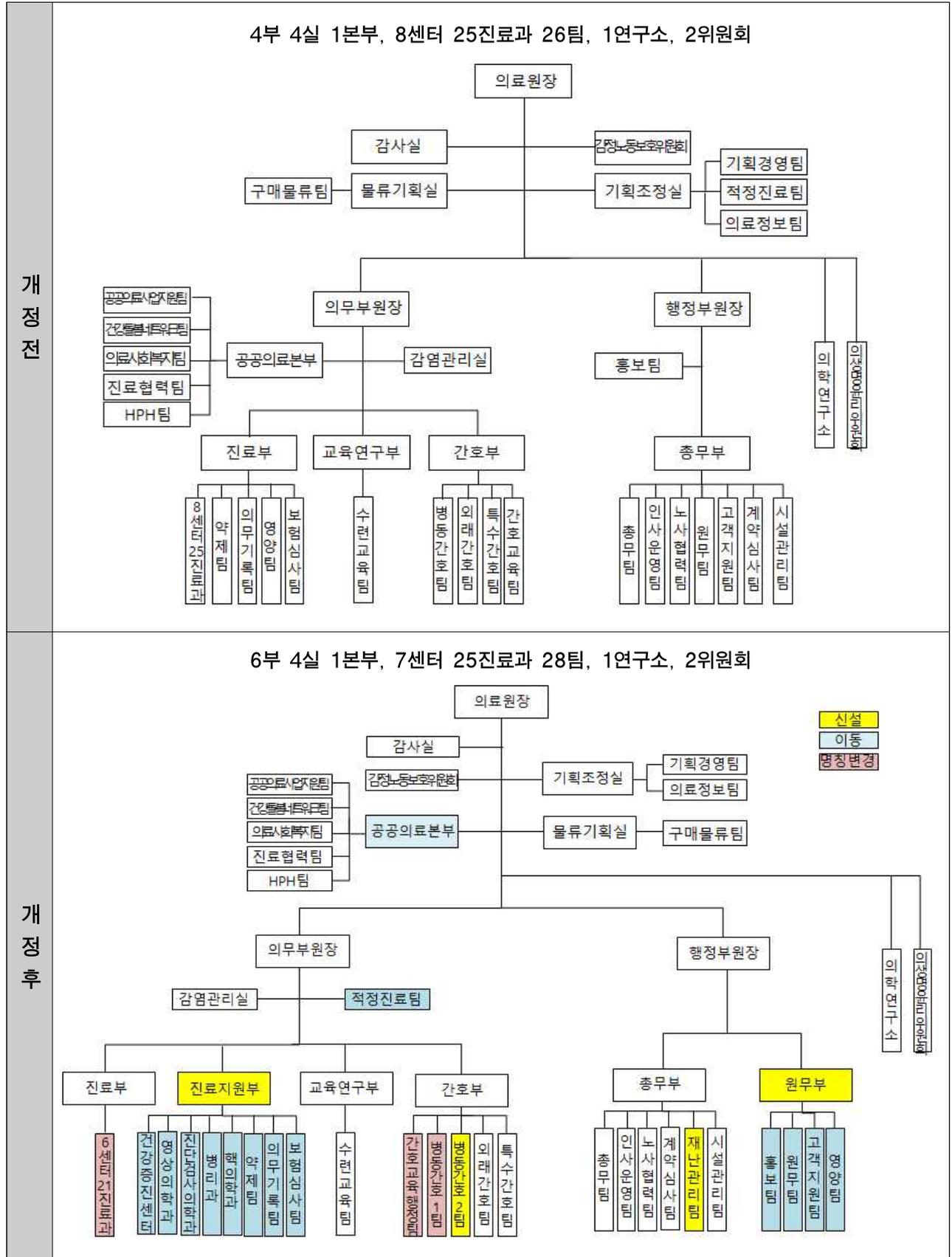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임원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~ 4. (생략)</p> <p>5. “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”에 따른 <u>노동자대표</u></p> <p>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·면하고, 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하되 비상임감사로 한다. 다만,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사회)의 기능) ① 다음 사항은 이사의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의료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</p> <p>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<u>중요한 규정의</u>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7.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에 관</p>	<p>제6조(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”에 따른 <u>노동이사</u></p> <p>⑤ 이사는 <u>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,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국장과 보건소장 및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삭제>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사회)의 기능) ① 다음 사항은 이사의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의료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</p> <p>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<u>규정의</u>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7.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에 관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한 사항</p> <p>8. 의료원 해산에 관한 사항</p> <p>9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</p> <p>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11. 기타에 운영상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이사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제31조(예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<u>이사회의 의결로</u> 확정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의료원의 조직은 <u>4부</u> 4실 1본부, <u>8센터</u> 25진료과 <u>26팀</u>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43조(위원회) ① 정관이 정한 위원회 이외의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원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<u>예산 및 외부 전문가의 위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<u>의료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한 사항</p> <p>8. 의료원 해산에 관한 사항</p> <p>9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</p> <p>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11. 기타에 운영상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이사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제31조(예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의료원의 조직은 <u>6부</u> 4실 1본부, <u>7센터</u> 25진료과 <u>28팀</u>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3조(위원회) ① 정관이 정한 위원회 이외의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원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<u>별도규정으로 정한다.</u></p>

<개 정 전 · 후>

[별표 1]



<개 정 전 · 후>

[별표 2]

정 원 표

○ 총괄

구분		계	임 원	의료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 지원직	임금피크제 별도정원
개정전	정원	1,950	3	283	20	800	178	161	9	250	220	26
개정후	정원	1,950	3	283	20	800	178	161	9	250	220	26
증감	정원	-	-	-	-	-	-	-	-	-	-	-

○ 의료직

구분		계	전문의	일반의	전공의
개정전	정원	283	177	3	103
개정후	정원	283	177	3	103
증감	정원	-	-	-	-

○ 약무·간호·보건·관리·연구·기능·운영지원직·임금피크제 별도정원

구분	계	1 급				2 급				3 급				약무· 간호· 보건· 관리직 4~6급	연 구 직	기 능 직 (1~3 등급)	운 영 지 원 직	임 금 피 크 제 별 도 정 원				
		계	약 무 직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계	약 무 직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계	약 무 직					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
개정전	정원	1,664	3	-	1	-	2	<u>16</u>	1	<u>6</u>	4	<u>5</u>	61	2	29	12	18	<u>1,079</u>	9	250	220	26
개정후	정원	1,664	3	-	1	-	2	<u>18</u>	1	<u>7</u>	4	<u>6</u>	61	2	29	12	18	<u>1,077</u>	9	250	220	26
증감	정원	-	-	-	-	-	<u>2</u>	-	<u>1</u>	-	<u>1</u>	-	-	-	-	-	-	<u>Δ2</u>	-	-	-	-